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595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4..

발 의 자: 강선우·김윤덕·추미애

서미화 · 김교흥 · 김한규

김 윤 • 박홍배 • 안태준

박해철 · 홍기원 · 조승래

박희승 · 정을호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구구조의 변화로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 빈곤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, 노인계층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인 경로당에서의 노인 대상 식사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경로당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양곡구입비에 대한 보조만 규정하고 있어,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실제 급식 제 공에 필요한 부식 구입비, 인건비 등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,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범위에 부식 구입비, 취사용 연료비 및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, 경로당 급식 제공 사업 확대를 통해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 려는 것임(안 제37조의2).

법률 제 호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의 제목 중 "양곡구입비"를 "운영비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양곡(「양곡관리법」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)구입비의"를 "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양곡(「양곡관리법」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)구입비
- 2. 부식(副食) 구입비
- 3. 취사용 연료비
- 4.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<u>양곡구</u>	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<u>운영비</u>		
<u>입비</u> 등의 보조) ① 국가 또는	등의 보조) ①		
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			
여 예산의 범위에서 <u>양곡(「양</u>	<u>다음 각 호에</u>		
곡관리법」에 따른 정부관리양	해당하는 비용의		
곡을 포함한다)구입비의 전부			
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			
<u> <신 설></u>	1. 양곡(「양곡관리법」에 따른		
	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)구		
	입비		
<u><신 설></u>	2. 부식(副食) 구입비		
<u><신 설></u>	<u>3. 취사용 연료비</u>		
<u><신 설></u>	4.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